

[학회회장 선출 규정]

2014년 3월 22일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칙 제14조에 근거하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선출방식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선거권)

회장 선거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 선거권을 갖는다.

제3조 (선거사무의 관리)

- ① 선거사무는 이사회가 위임한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선관위”라 칭한다)가 관리한다.
- ② 선관위는 직전 전임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은 본인을 포함하여 전임회장 중 5인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.
- ③ 선관위는 회장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4조(회장후보 선정 절차)

- ① 선관위는 회장후보 선정을 위한 이사회 30일 전까지 구성한다.
- ② 선관위는 7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(복수 추천 불가)을 받은 후보자 본인이 등록하도록 하며, 후보자 자격은 전임회장을 제외한 현 학회이사로 한정한다.
- ③ 선관위는 회장후보 선정을 위한 이사회 20일 전까지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15일 전까지 후보자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이사들에게 공개한다.
- ④ 이사회에서 단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다. 단, 최다 득표자가 투표 인원 30%미만의 득표를 한 경우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선정한다.
- ⑤ 선관위는 이사회의 후보선정 즉시 선정된 후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한다.
- ⑥ 선관위는 총회 15일 전까지 선정된 회장후보 1인의 정보를 정회원에게 공개한다.

제5조 (선거방식)

총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회원에 의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찬성인 경우 회장으로 결정한다.

제6조 (추천양식 및 투표용지)

- ① 추천양식 및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가 정하고 추천양식 및 투표용지에는 학회 직인과 선관위 장의 사인이 날인되어야 한다.
- ② 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기표란을 둔다.

제7조 (개표관리)

- ①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.
- ② 개표할 때에는 선관위가 입회한다.

제8조 (당선자의 결정 및 통지)

선관위는 회장당선자가 결정되면 총회에 공고하는 동시에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끝